

의안번호	2217519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6. 5. 15.
추 계 번 호	26B160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호의2(정의)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1의2. “지능형 농업로봇”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u>	의무규정
2	안 제4조제3항(자금 지원)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호의2(정의) 신설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제3항(자금 지원) 신설	

2. 상세 사유

□ 지능형 농업로봇 구입 등 지원(안 제4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지능형 농업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농업로봇 구입·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 전환, 로봇 전환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산업화를 위해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표 1]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사업화기술개발(R&D)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2026	2027계획	2028계획	2029계획	2030계획	합계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고난도·고강도 작업 로봇 대체)	5,400	7,200	7,200	7,200	2,400	29,400
농작업 드론 활용 기술개발 (드론 활용 농작업 자동·지능화)	1,575	2,100	2,625	2,100	2,100	10,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